

##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4. “농어촌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.

##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농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 - 가. 읍·면의 지역
  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##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

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71호)[시행 2015.12.23]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
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)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
  - 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녹지지역
  - 나.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
  - 다.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
※ 용도지역 확인 방법 : ① 토지 이음(eum.go.kr) 접속 → 토지이용계획 선택 →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후 열람 하거나 ② 해당 시·군에 문의

The screenshot shows the '토지이용계획열람' (Land Use Plan Inquiry) service on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(eum.go.kr). The interface includes a top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'토지이용계획', '도시계획', '규제안내서', '고시정보', '정보마당', and '처음오셨나요?'.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with dropdown menus for '경기도', '시군구', '읍면동', '일반', '본번', and '부번'. A large blue search button labeled '열람' is prominently displayed. At the bottom of the form, there are links for '개인정보처리방침', '저작권 정체', '서비스안내', '의견수렴보내기', and '품질오류 신고 및 확인'.